

# 해 외 출 장 복 명 서

## 1. 출장개요

□ 출장건명 : 일본의 농업소득세 관련 정책 및 신고·납부 현황조사

□ 출장목적

- 우리나라는 농업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를 하고 있으나 식량작물재배업과 10억 원 이하의 작물재배업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를 허용하고 있음.
- 작물재배업의 소득세 비과세는 식량생산을 장려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농가의 품목간·산업간 소득세 과세 형평성, 농업인의 소득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 정책 추진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음.
  - 소득세 부과 시 동일한 소득을 얻는 사람은 동일 수준의 세부담을 갖도록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
  - 소득세 비과세로 인해 작물재배업 종사 농가는 소득신고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농가의 실제 소득 파악을 통한 정밀한 정책 대상 설정이 어려움.
- 특별한 정책목표나 조건에 의해 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 외에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조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은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임.
- 따라서 작물재배업에 대한 소득세 과세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단, 작물재배업에 대한 소득세 과세 시 예상되는 사회적 저항과 농가의 세 부담 증가로 인한 영농활동 위축, 농가의 세무 및 회계 지식 부족으로 인한

소득신고의 어려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전체 농업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작물재배업 과세로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우리와 농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현재 종합과세를 하고 있으며 사업소득에 농업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작물재배업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음.
- 일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의 부수적 효과를 부각할 수 있는 보완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일본 농가의 소득세 신고 및 납부 현황과 비과세 현황을 조사하고 농가의 장부 기장에 의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세무 관련 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이 출장의 주요 목적임.

## 2. 출장자 및 출장기간, 출장지

소 속	출장자	직 위	출장기간	출장지
농식품정책 성과관리센터	임소영	부연구위원	2016.5.23.(월)~5.26.(목) [3박 4일]	일본 도쿄
	김윤진	초청연구원		

## 3. 주요 조사내용

- 일본 농업인 소득세 납부 현황
- 일본의 작물재배업 소득세 개요
- 일본 농업인의 소득세 관련 청색신고 및 기장 활용 현황
- 농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 기장 및 세무관련 서비스 이용 실태

- 일본 농업소득 과세를 통한 축적된 자료의 농정 활용 방안
- 소득세법상 농업인의 정의
- 기타 소득세 납세 현황 및 통계자료 요청

#### 4. 주요 면담자

일 시	일 정	주요 면담자 및 논의 내용
5/24 (화)	○ 모리회계사무소 세무사 면담 - 모리 다케카즈 (森 剛一)	○ 일본 농업 전문 세무사 면담 - 일본 농업소득세법 개요 - 기장 및 세무 관련 서비스 실태 - 신고제도(청색/백색) 이용 관련 - 농업인 소득신고 현황 - 기장 및 소득신고 관련 실태 및 일본농협의 역할
5/25 (수)	○ 농림수산성 경영국 총무과 세제반 담당자 면담 - 니시무라 (西村 基)	○ 농림수산성 농업 세제 담당자 면담 - 일본 농업소득세 역사 - 일본 농업 소득세 관련 정책제도 - 농업의 농업소득 과세 개요 - 농업 소득세 축적 자료의 농정 활용 여부 - 경영기반강화 준비금 제도 개요

※ JA 농협관계자 면담은 현지사정으로 추후 유선을 통해 질의응답 예정

#### 5. 주요 출장내용

##### (1) 모리 다케카즈 (森 剛一) 회계사 면담

- 일본의 소득세 개요
  - 일본은 처음부터 소득세에 농업이 함께 도입되었음. 초기 농업부분에 일부 면제 소득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개간한 경우에는 면제, 개간지가 아닌 농사를 지속적으로 짓고 있던 범위에서는 소득세를 도입
  - 일본의 소득세 원칙은 신고 납세로 기본적으로는 신고를 통해 소득세부과를 부과하기 때문에 수지계산이 필요함. 초반에는 농민들이 장부 작성 등에 어려움을 느껴 전면적으로 하지 못 하였으나 현재는 전면적 실시

- 인보이스를 토대로 납세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액을 역산해서 세금을 측정하는 제도로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모두 금액 역산
- 장부 작성 및 수지작성과 관련한 농가 교육 실시 여부
  - 일본 고령자들의 대부분은 소규모, 수전농(水田)로 일본 농협중앙회(이하 JA)과 주로 거래하고 있음. JA를 통한 거래액은 JA에서 명세서 등을 발급하여 증명서류로써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벼농사의 기자재는 장기 사용이 많기 때문에 활용 가능
  - JA의 판매금액과 거래내역만 가지고 거래내역서를 소득신고에 직접 숫자만 옮겨 적는 방식으로 JA에서 신고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닌 자료를 종합해서 제공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년 간 출하한 쌀, 야채, 작목에 대한 판매 금액 등의 수치를 JA에서 제공하여 농가에서 수치만 간단하게 입력하고 자료 증빙할 수 있도록 두고 있어 농가에서 직접 작성 가능
- JA농협을 통해 판매하는 농업의 비중
  - 지방 JA의 경우, 매출액 통계를 집계할 수 있거나, 자료 수집이 가능한 농협도 있지만 이러한 업무가 불가능한 농협도 있어 정확한 비중은 알기 어려움.
- 현재 농가의 장부 작성 방식
  - 농가에서 부기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이때 간이와 복식 부기 장부 두 개가 있음.
  - 극히 소수이긴 하지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람도 있음.
  - 간이 부기작성의 비중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매우 간단한 수준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경비 영수증을 기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세금법상 3만 엔 이상의 경우는 건당 매출액을 기본적으로 기입해야 함.
- 농민단체의 농가 기장 지도
  - 기장지도를 하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JA 뿐 아니라, 농민연맹이라는 여

러 단체를 지원하고 있음.

- JA는 전국에 지점이 있기 때문에 JA를 통해 거래하는 농민들이 많아 거래 자료를 활용하여 기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음
- 청색신고제도와 백색신고제도의 차이점
  - 형식적으로 기장 의무가 있으나, 특전이 더 있는 청색신고를 장려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됨.
  - 청색신고를 활용하던 신고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속이는 경우 취소시키는 것이 패널티이며, 백색신고는 이러한 경우에 패널티가 있는 것은 아님.
  - 백색신고의 장부가 의무화되기는 했지만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음.
- 농업소득 신고에 따른 패널티 여부
  - 신고의 의무가 세금법 상에 있으나, 기본적으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에 따른 세무조사에 어려움.
  - 일본의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특례공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3명인 경우, 부양 공제, 기초공제까지 포함하면 소득이 160만 엔 보다 작을시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수준의 농가가 많다고 판단되며, 자체적 판단 하에 신고를 하지 않는 농가가 있음. 다만, 소득세가 발생하였는데 신고안하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발각되면 추징금 발생
- 일본의 겸업농가
  - 고령농가, 벼농사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회사원에서 전업하는 경우가 많고, 연금생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득 후자가 별로 없음.
  - 또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농업을 겸업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며, 겸업의 경우 수익 창출보다 집안 농지 유지를 목적으로 수익을 따져 농사를 하지는 않음.
- 국세청과 농림수산성의 통계 수치 관련(총 농가수, 판매농가, 주업농가, 소

특신고농가 통계)

- 상기한 바와 같이 겸업으로 농업소득이 낮은 농가, 자가로 생산하는 농가, 남으면 출하도 하는 농가가 많은 편. 이렇게 전업이 아니더라도, 판매농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판매 농가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매출 수준이 아주 낮기 때문에 자가 판단 하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오히려 농업 소득 부분의 적자가 많아 총 농가수 대비 신고농가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
  - 처음부터 청색신고를 하는 사람은 이익 또는 적자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색신고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농가는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일본소득세의 결손 보존 가능 여부(농업의 결손 부분을 다른 사업소득에서 보전하여 전체 소득액 감액 여부)
- 일본 역시 소득의 이연이 가능한데 이는 청색신고자에 한하며, 이 역시 청색신고의 특전 중 하나로 판단됨.
  - 백색신고는 결손금이 있어도 이연을 할 수 없음.
- 실무 입장에서 느낀 표준 소득률에서 기준경비율로 제도 변화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 여부
- 대규모 반대 또는 눈에 띄는 반대는 없었음.
  - 농업에 한정된 표준과세를 없애는 데에 반발은 없었으며, 다른 산업과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었음.
- 농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과세특례 중, 농업경영기반강화준비금의 필요경비 인정과 농업경영기반강화준비금을 적립한 개인이 농지나 농업용 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것(이중 혜택 여부)에 대한 입장
- 이 제도는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아닌 세금 수납을 미루는 것으로 면제가 기본 방침은 아니기 때문에 이중 혜택은 아니라고 판단함.

<농림수산성-농업경영기반 강화 준비금 제도 설명 자료>1

□ 농업 경영기반 강화 준비금 제도란?

- 경영소득안정대책등의 교부금을 활용하여 계획으로 농업경영의 기반강화(농지, 농업용건물, 기등의 취득)을 도모하는 노력을 지원

<특례조치의 내용>

- 농업인이 경영 소득 안정 대책 등의 교부금을 농업경영 개선계획 등에 따라 농사업 경영 기반 강화 준비금으로 적립 한 경우, 이 적립액을 개인은 필요 경비에 법인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또한 농업 경영 개선 계획 등에 따라 적립한 준비금<sup>주</sup>)을 철거하거나 접수 받은 교부금을 그대로 사용하여 농지, 농업용 건물·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 압축 기장\*할 수 있음.

주: 이 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방법으로 기장\*\*하고 청색 신고에 의해 확정신고(첫해는 세무서에 사전신고)해야 함.

\* 압축 기장은 교부금으로 취득한 농업용 고정 자산의 장부 금액을 일정액까지 감액하고 그 감액 분을 필요 경비(손금)에 산입하여 그 해 (사업 연도)의 과세 사업 소득을 감액하는 방법

\*\* 일정한 방법으로 기장은 복식 부기에 의한 기장이 원칙이지만, 개인의 경우 현금 출납장 외상 매출 번호부, 외상 번호부 등을 구비 단순 기장을 하는 것만으로도 특례를 받을 수 있음.

(例) 5년간積み立てて、6年目に農地等を取得した場合



<사례: 5년간 적립하여, 6년째에 농지 등을 취득한 경우>

\* 상자는 적립한 준비금을 말함.

\*\* 상자6은 교부금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

- 교부금을 투자로 전용하여 경영 발전을 목표로 함.

<p>○ 준비금의 적립</p> <p>- 교부금을 준비금으로 적립 한 경우 이 적립액의 범위 내에서</p> <p>① 개인은 필요 경비 산입</p> <p>② 법인은 손금 산입</p> <p>(적립하지 않은 교부금은 과세 대상)</p>	<p>○ 농업용 고정 자산의 취득</p> <p>- 농지, 농업용 건물·기계 등의 취득에 충당한 다음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내에서 압축 기장</p> <p>① 준비금 취봉(取崩)</p> <p>② 그 해에 받은 교부 금액</p>
---	---

참고 : 적립한 이듬해에서 5년을 경과 한 준비금은 순차적으로 총수입 금액(익금)에 산입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산입 된 년도에 해당 고정 자산을 취득 하면 필요 경비(손금)에 산입 할 수 있습니다. (헤세이21년에 적립한 준비금은 헤세이27년에 5년을 경과하고 헤세이27년 소득의 계산상, 총수입액에 산입됩니다.이 때문에, 해당 준비금을 필요 경비에 산입하려면 헤세이27년 말까지 농업 경영 개선 계획에 근거하여 농용지나 농업용 기계 등을 취득할 필요가 있음.)

□ 필요 경비 (손금) 산입 한도액

(1) 농업경영 기반강화 준비금 적립시

○ ① 또는 ② 중 적은 금액이 농업 경영 기반 강화 준비금의 적립에 의한 필요 경비 (손금)산입 한도액

① 준비금으로 적립하고자하는 금액 (교부금 수입의 범위 내에서 농림수산부 장관의 증명 금액)

② 사업 연도 사업 소득의 금액

(2) 농지 등의 취득 (압축 기장) 때

○ ① 또는 ② 중 적은 금액이 고정 자산 취득시의 압축 기장에 의한 필요 경비 (손금) 산입 한도액(단, 취득한 고정 자산의 가액이 상한)

① 준비금의 취봉(取崩)금액과 연도 (사업 연도)의 교부금 수령액 중 농업용 고정 자산의 취득에 충당 한 금액 (농림 수산부 장관 증명하는 금액)의 합계액

② 사업 연도 사업 소득의 금액

취득한 고정 자산의 가액이 1,250만 엔 이상 있으면 1,250만 엔이 한도

- 일본은 농산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지 않음.
  - 장부방식인 경우에 소비세가 발생하지만 인보이스를 발급을 하지 않으며, 장부를 기초로 계산. 다만 추후 인보이스 제도를 도입한다는 논의는 있음.
  - 개업 신고 시 세무서에서 배당 되는 번호가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인보이스 등 사업자 등록의 용도로는 사용되는 것은 아님.
  - 올해부터 “마이 넘버”라는 고유번호가 도입되어 신고할 때 사용될 예정이며,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발급.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이는 소득세 신고나, 국가로 부터의 생활보호(연금)를 받을 때도 해당 번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도용문제 방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
  - 농민도 거래를 하면 개업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판단
  
-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농가 비중
  - 전체에서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사람은 소수라고 판단됨.
  - 상당수 JA가 만든 서류를 기초로 해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청색신고회를 통해 하기도 함.
  
- 일본의 수입보험제도 도입 배경 및 취지
  - 정부에서 소득세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책의 일환으로 수입보험제도를 TPP 등 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에 대한 안전망으로서 도입하려고 하고 있음(다만, 정부는 수입개방과 연결하지 않음).
  - 수입보험제도는 청색신고제도에 기초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임(2018년 예정). 아직 법률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2017년에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 예정
  - 현재는 농업공제회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예를 들어 지진의 경우, 농수 부족으로 모내기를 못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 만약 수입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 수령가능

---

1 농림수산성 니시무라 하지메 계장 제공, 농업경영기반강화준비금제도 관련 자료 ([http://www.maff.go.jp/j/new\\_farmer/pdf/9\\_junbikin.pdf](http://www.maff.go.jp/j/new_farmer/pdf/9_junbikin.pdf))

- 화산분화 시, 화산재 영향으로 야채 재배가 불가능하더라도 노지채소가 보험공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함.
- 일본의 공제제도는 논이나 밭에 작물이 심어져 있을 때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지만, 수입보험제도는 전후 중에도 수입액이 낮아졌다고 평가되면 수입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음.
- 이때 수입 감소여부의 소득 자료를 청색신고제도 자료로 활용가능하며, 청색신고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2. 농림수산성 담당자 니시무라 하지메(西村 基) 계장 면담

- 일본 농업 소득세 역사
  - 소득세는 1887년에 처음 도입했음. 이전에는 세금의 주된 내용이 “지조”라고 해서 지대를 기준으로 한, 세금이 기본이었음.
  - 소득세 도입하면서 농업소득도 포함되었음, 즉 처음부터 이자, 주식배당, 연금 등과 함께 소득세 과세 대상이었음.
- 일본 국세통계 자료와 통계청 농업인의 통계상의 차이의 원인
  - 주업농가의 수가 적고, 겸업 비중이 높음. 일본의 겸업 농가는 전체의 70% 정도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음.
  - 판매농가의 정의가 상당히 넓은데, 실제 농가에서 물건을 판매하지 않아도 “판매농가”에 포함됨. 판매농가의 정의 상 영농 경지 면적이 30a이상인 경우, 농산물 판매 금액이 50만 엔 이상인 경우에도 판매 농가로 포함
  - 또한 논밭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고, 도시의 자녀에게 주는 경우에도 판매농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판매농가(146만 호)의 수치가 높음.
  - 겸업 농가의 대부분이 매출이 낮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총 농가수(253만 호) 대비 신고농가(24.9만 호)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세금을 내고 있는 농가는 25만 명 수준으로, 146만 명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판단됨. 즉, 성실 신고자는 25만 여명에 불과함.

표. 일본 농업 기본통계

항목		수치	년도
농업	농가	총농가호수	233만 호
		판매농가	146만 호
		주업농가	32만 호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15.

일본 농림수산업 통계표

주: 농업소득이 주, 1년간 60일 이상 자영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65세 미만 농가

표. 일본 소득원천별 소득세 현황

단위: 명, 백만 엔

연도	사업소득						그 외 소득	
	소계		농업소득		농업 외 소득		신고인원	신고 소득 금액
	신고인원	신고 소득 금액	신고인원	신고 소득 금액	신고인원	신고 소득 금액		
10년	1,746,548	5,608,755	282,986	525,046	1,463,562	5,083,709	9,498,468	26,111,704
11년	1,877,885	5,927,617	327,436	590,223	1,550,449	5,337,394	8,331,391	24,375,052
12년	1,945,769	6,221,123	352,625	673,580	1,593,144	5,547,543	8,330,104	24,437,835
13년	1,947,913	6,333,527	313,945	599,660	1,633,968	5,733,867	8,507,222	25,689,528
14년	1,923,056	6,409,570	249,819	500,815	1,673,237	5,908,755	8,332,471	25,580,058

주 1) 신고 납세액이 있는 자의 인원 및 신고 소득금액을 의미함.

2) 신고 소득세 소득의 종류마다 납세자 수를 나타낸 것으로 1명의 납세자가 2 종류 이상의 유형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 1명으로 함.

3) 그 외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급여소득, 종합양도소득, 일시소득, 기타 잡소득이 포함됨.

자료: 일본국세청. 연도별. 「국세청통계연보」

○ 일본의 전(戰)후 농지개혁

- 일본은 전(戰)후에 농지개혁을 실시하여, 대부분 자신의 농경지를 가지고 있으며, 농가 한세대 당 1ha 수준을 경작
- 또한 1868년(메이지 유신)에 개혁을 하였는데, 이때도 전(戰)후와 마찬가지로 1농가 당 1ha의 경작지를 가지게 됨.
- 전쟁 이전에는 농경지 매매가 이뤄지면서 점차 토지 소유의 양극화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농지개혁은 이를 이전의 균형적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쌀농사를 하는 경우 일본 정부에서 매입해주는 등의 정책 펼치면서 일정수준 소득을 보전

- 경제 성장 -> 도시화 -> 쌀소비 감소 -> 시골·지방에 공장을 설립 및 운영 -> 쌀농사를 짓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음(정부지원).
  - 과일이나 축산보다 쌀이 더 용이한 농사라는 인식이 있어, 농촌의 공장 에서 일하는 동시에 쌀농사를 하면서 소득을 보전하는 상황
- 일본 역시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어 농가 스스로 장부기장 및 영수증 보관 등의 의무를 하는데 애로 사항 또는 정부 차원의 교육이나 지원제도 여부
-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교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음.
  - 다만, 지역의 세무서에서 장부기장 및 기타 사항을 상담 및 교육
  - 세금 신고 의무는 있으나 국세청 역시 업무 과중으로, 고액납세자는 관리 하고 있으나 고령농이나 소형농의 경우 납세할 세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무조사와 같은 행정적 업무가 어려운 현실
- 농가의 과세자료가 농업정책의 수립 또는 운용에 이용되는 사례 여부
- 과세 정보는 국세 당국·지방세 당국 기밀이 걸려 있어, 보조금 등의 정책 수단이라 할지라도 과세 정보를 사용할 수 없음.
  - 또한, 1946년 ~ 47년에 실시 된 토지 개혁을 통해 농업 경영자의 경영 규모는 대체로 1ha ~ 1.5ha 정도가 된 것으로 쌀의 경우 정부가 일단 구입하고 소비자에게 매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가 개별 소득을 파악하지 않고도 정부가 매입 가격을 조작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 할 수 있었음.
  - 현재도 토지 이용 농업 내용은 "담당자"에게 지역의 수확량과 가격을 사용하여 수입 감소 보전을 실시 등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소득"을 계산하고 지원을 실시
- 이 외에 소득 자료를 활용한 정책 여부
- 청색 신고제도를 기준으로 정책을 하기 보다는 청색신고를 요건으로 하는 정책은 있음.
  - 예를 들면 청색신고를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 해주거나, 작은 회사가 새로운 기계를 도입할 시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음.
  - 보조금의 요건으로 청색신고 제도를 정책에 활용한 경우도 있으나 그렇

- 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국세청으로부터 농업관련 세금 자료를 제공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 활용에 제약은 있음.
- 농림부에서 농업의 수입보험제도 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 청색신고제도를 활용하여 정책을 향후 추진 할 예정
- 수입보험제도에서 국민들이 소득신고 시 작성하는 청색신고 장부를 기초로 활용할 예정
  - 정확하지는 않지만 향후 2~3년 후에 도입할 예정
  - 현재는 농업공제가 이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
  - 수입보험제도가 청색신고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시, 과거 5년의 수입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 때 농가는 장부의 보관 의무를 가져야 하는데 이는 청색신고가 과거 소득 증명으로 활용되기 때문임.
- 농업공제 제도의 피해보상
- 태풍이나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농가 현장조사를 나가 실제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고 지원
  - 일본의 피해금액 산정의 기준 책정(예: 피해면적당 금액 등) 방법은 면적당 지역평균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경영안정대책이 있어 현단위로 실시
- 농산물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소비세)의 세율과 이에 따른 농가가 사업자등록 유무 여부
- 현재 소비세의 세율은 8%로 내년 4월 1일부터, 식료품 등을 제외하고 세율을 10%로 인상할 예정임.
  - 소비세는 "매출-매입 × 8/108"로 계산
  - 일본의 소비세는 유럽의 '청구서(인보이스)'를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은 불필요함(단, 4년 후보다 "청구서"가 도입 될 예정).
  - 또한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특례 조치가 있음.
- ① 면세 사업자 제도 : 매출이 1,000만 엔 이하의 사업자는 소비세의 납세

가 불필요

- ② 간이 과세 제도 : 매출이 5,000만 엔 이하의 사업자는 "매출 × 간주사업율×8/108"로 계산 가능. "간주사업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농업의 경우는 70%

○ 청색신고제도와 관련한 농가의 활용정도

- 농림부에서는 농업수입이 있으면서, 청색신고를 한 사람은 42만 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물론 농업부분의 수입이 있으나 청색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임.
- 청색신고는 2가지 부류로 나뉠 수 있는데 '정확히 제대로 부기를 하는 사람', '간이장부를 하는 사람'으로 분류 됨. 이중 복식부기를 하는 사람은 20만 명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음.
- 청색신고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
- 다만 국세청에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파악한 수치와 국세통계 연보 수치와 맞지는 않을 수 있음.

○ 청색신고시 세제상의 혜택

- 농림수산성 차원에서는 없으나. 청색신고가 이득이 많은 제도라고 생각 됨. 비록 복식부기는 복잡해서 어렵지만 간이장부는 간단하기 때문에 장부작성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표 . 청색신고의 승인신청현황

		2013년		2014년		2015년	
		천 명	%	천 명	%	천 명	%
경영등 소득자	신규신청자수	138	116	168	122	162	96
	청색신고자수	3,474	102	3,559	102	3,679	103
농업 소득자	신규신청자수	14	140	15	111	13	88
	청색신고자수	410	101	415	101	421	101
부동산 산립소득자	신규신청자수	71	113	83	117	81	98
	청색신고자수	1,816	102	1,855	103	1,923	103
합계	신규신청자수	223	116	266	120	256	96
	청색신고자수	5,701	102	5,839	102	6,023	103

주 1 %은 전년대비

2 신규신청자수는 각연도 3월 15일 현재 기준, 청색신고자수는 익년 3월 15일 현재

자료: 농림수산성 경영국 총무과.

- 농림수산성의 기본 입장은 농업 전반 상황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하고자 하고 있으며, 세금 관련 통계 및 세수에 대해 크게 관여 하지 않고 있음.
  - 국세청 신고인원 25만 명의 통계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수입을 올리면서 농가 경영의 자세로 농업을 하고 있는 인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이전과 현재 모두 농민들과 농림수산성은 수확한 농작물의 판매와 소득 안정, 재해 시 피해보상 대책에 큰 고민을 하고 있음.
  
- 소득세 신고 방식이 두 차례에 걸쳐 바뀌었는데, 변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또는 농민의 제도 변화 수용 여부
  - 농업을 하고 있던 농업인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백색신고에 기장 의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농민·농업 단체의 반발은 많지 않았음.
  - 다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제도 변화가 기존의 소규모 농가 중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농가가 장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장부를 작성하던 농가는 변화 없이 장부 작성을 하면 되는 것으로 저항이 크지 않았음.
  
- 농민의 장부 기장 지원 관련
  - 신고를 할 세무서에서 질문이나 상담을 받거나 하며, 또한 신고서를 만드는 방법은 ①세무사 또는 ② 농업협동조합의 세무 상담에 상담을 실시하여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소규모 농가의 경우 판매처는 JA 중심이 많기 때문에 농협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생산 자재를 매입하는 경우 농협의 전표를 장부에 활용 가능
  - 실제로 JA는 농가의 작물 선택, 대출업무, 세무 상담 등 관여하는 업무가 많은데, 특히 JA의 가장 큰 수입은 대출 업무임. 즉, 농가의 수입과 지출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은 JA로서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나 정책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음.
  
- 농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과세특례 중, 농업경영기반강화준비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과 경영기반강화준비금을 적립한 개인이 농지나 농업용 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혜택이 있음.

이는 이중 혜택이라고 판단됨.

- 농림수산성의 입장은 이중 혜택이 맞다고 판단
  - 준비금이라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지만 장래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이익을 연기하는 개념임. 보통 준비금을 파기 하고, 다른 것을 구매하였을 때 수입이 발생하는 것임. 준비금은 다소 특별해서 기계를 샀을 때, 감가상각이 적용이 안 되어, 국세청이 다시 돌려받고 있음.
  - 전후에 일본에 쌀이 부족하여, 쌀을 재배하라고 정부가 쌀을 구매하는 지원제도를 펼쳤는데 이는 신속한 수확을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겠다는 의도임. 경제 발전 후 쌀 생산 과잉으로 쌀농사를 짓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보조금의 세금도 감면해줌.
  - 준비금은 10년 전에 생긴 것인데, 쌀농사를 짓지 않아도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제도를 대체하면서 해당 제도가 생김. 보통 다른 준비금에 비해 특권이라고 보고 있음.
- 청색신고제도의 혜택이 많은데 백색신고와 똑같은 의무를 갖고 있는 이유 및 청색신고를 유지하는 이유
- 원칙적으로 일본의 소득세는 신고납세 제도로 개인이 신고하면 부과하는 제도임. 즉, 개인이 장부를 작성하여, 국가가 그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지만, 폐전 후 국민들에게 장부작성을 장려하기 위한 특례를 준 것이 청색신고제도임.
  - 2014년 1월부터 의무화 되는 백색신고는 기존의 청색신고 간이 장부와 거의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는 국세청으로써 청색신고의 간이장부를 없애고 복식부기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농업단체도 청색신고를 유도하고 있음.
  - 청색 신고는 ① 정규 부기 (공제액 65 만 엔, 복식 부기)과 ② 간이 기장 (공제액 10 만 엔, 현금 출납장 등 가능)의 2 종류가 있으며, 간이 기장과 백색신고에서 사용 기장은 거의 다르지 않음.
  - 청색신고의 경우에는 농업의 특성상 수입의 편차가 커져도 상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
  - 신고 장부와 함께 개인이 이중장부를 하는 경우 있으며, 농가에서 백색신고와 청색신고 신고 유무에 따라 이해타산을 따져보고 하는 경우도 있

다고 판단됨.

< 니시무라 하지메(西村 基) 제공 청색·백색신고제도 관련 일본국 세청 연구활동 자료2 >

□ 사업 소득자의 과세 방식 검토 : 세무대학교 아사이 카나메 교수

(1) 백색 신고자의 전면 기장 의무화에 따른 검토 과제 논의

- 2011 년도 세제개정에서 백색 신고자의 기장·장부 등 보존 의무의 확대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 이와 같이 백색 신고자의 전면 기장 의무화라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장 의무 위반했을 경우의 벌칙 등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실효성에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음을 지적

- 검토 사항

- ① 필요 경비를 개산(概算)에서 공제하는 조세 특별 조치방식
- ② 올바른 기장을 하지 않는 사람의 필요 경비의 공제 방식
- ③ 백색 신고자의 등록 수준이 향상된 경우의 현행 전임자 공제에 대해 그 전담실태 등을 감안한 재검토의 방향

(2) 백색신고 기장 의무화에 따른 청색신고 존치 논의

○ 현재 청색 신고자의 기장은 ① 정규 부기에 의한 것, ② 간단한 부기에 의한 것, 그리고 ③ 현금주의에 의한 것, 이렇게 3 개의 기장이 인정되고 있음. 반면 백색 신고자의 기장은 청색 신고자의 기장보다 간단하지만, 청색신고의 특전은 정규 부기에 의해 기장한 자에 한해 인정하고 있음을 지적

○ 또한 백색 신고자에 기장 의무가 부과되므로 청색 신고 특별 공제 (65만 엔, 10 만 엔)도 그냥 기장하고 있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10만 엔의 청색 신고 특별 공제는 폐지하고, 백색신고 전임자에 대해서도 청색과 마찬가지로 전임자 급여를 인정 등 기장 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재검토 할 필요성을 제시

○ 백색 신고자도 전면 기장 의무화되어 청색 신고 및 백색 신고와의 차이가 축소되면서 청색 신고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법인의 청색 신고 비율이 90%이상인데 반해 개인의 청색 신고 비율은 1975년 50%이상을 차지한 이후 큰 변동이 없었으나, 1999년의 청색 신고 비율은 56%로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현재 청색신고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

- 기장 수준을 향상시킬 인센티브로서 청색 신고 제도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당분간은 청색 신고 및 백색 신고에 대해 기장 수준에 따라 체계적인 검토를 실시 가면서 기장 의무가 정착 될 때까지 존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음.

- 세금 납부의 목적보다는 농가가 자립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의 장부 작성을 중요하게 판단
  - 현재 농림수산성의 목표는 농가가 자립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키워나가는 게 목표임. 청색신고 유무에 상관없이 장부를 작성하고 합리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음.
  - 세금 납부 뿐 아니라 장부 작성은 농민 스스로 자신의 경영 파악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단됨. 예를 들면, 기계를 어떤 시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인지, 노동고용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무엇을 재배해야 이윤을 낼 수 있는지 등 농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장부 작성하는 것이 농민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 한국정부도 농업경영을 위하여 농민들이 장부작성을 할 수 있게 독려하고자 하지만 농업 소득신고의 의무가 없어서 장부를 작성할 유인이 없음. 일본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
  -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장부를 작성하라는 의미로 농민이 받아들이면 농민입장에서는 반발이 클 수밖에 없음.
  - 장부작성의 장점을 부각할 필요성이 있음. 장부 작성의 장점 중 하나는 농가의 경영 상황을 농가 자신이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임. 장부 작성이 중장기적으로는 농가의 수익 향상과 연계 가능성을 홍보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임.

---

2. 아사히 카나메(淺井 要). 2012. “事業所得者の課税のあり方の検討-事業所得における概算経費控除の導入の検討を中心として-”, 税務大學校.